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사업비 정의 규정 신설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48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사업비 정의 규정 신설	3
2.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향만시설 사용허 가 또는 승낙 의제	7
3.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정비	11
4.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등	14
5. 실시계획 포함 사항 및 승인 후 착수 조건 정비	24
6. 매도청구 토지의 양도 등	27
7.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토지 범위 및 토지 분양가의 상한금액 규정 신설	31
8.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 삭제	36

9.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정비	40
10. 공익을 위한 처분에 항만배후단지개발 포함	44
11.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	46
12. 청문 규정 정비	49
13. 벌칙 규정 정비	52
14. 부 칙	55
IV. 입법의 재정영향	5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6.
3. 회 부 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향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향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는 현행 「향만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리청향만개발사업과 향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

업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인 물류기업 유치 및 활성화보다 분양 수익 창출에만 집중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며, 총사업비의 법률 근거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사업비 정의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정의를 종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총사업비”란 <u>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조사비, 설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항만법」은 총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항만법 시행령」¹⁾에서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총사업비는 항만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여부 결정 기준²⁾,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 결정 기준³⁾ 등

1)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준공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개발사업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관리비나, 계약을 통해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해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
 - 다.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으로 기능하므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항만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정의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항만법」상 ‘총사업비’가 조문별로 ① 예정 또는 추정 금액과 ② 실제 사용된 금액의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총사업비를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0조의2제2항제2호4) 등에서는 총사업비를 ‘사전적으로 추산하는 예정 금액’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어, 두 가지 의미를 아우를

2) 「항만법 시행령」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

3)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7486호)」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규정하거나, 두 개념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는 관리청이 아닌 자(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서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예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 의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얻고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제41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생략)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u>제1항</u> 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 ----- ----- ----- <u>제1항제1호</u> 또는 <u>제5호</u> ----- ----- -----.
<신설>	③ 사업시행자는 제51조에 따라 <u>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u> 의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⁵⁾은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의제 규정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간의 법적·제도적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5)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관리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41조제3항의 ‘사업시행자’는 안 제50조의2제2항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이므로, 약칭 정의 규정 이전에는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항만시설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7486호)」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가. 개정안의 요지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11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⁷⁾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삭제될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⁸⁾의 자가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법 제47조 삭제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제50조제1항 각

7)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항만법」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46조제1항 후단의 변경의 대상과 같은 조 제5항의 변경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46조제1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을 변경의 대상으로, 같은 조 제5항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후단의 변경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의 대상이 불분명함. 아울러, 현행법 제45조9)를 고려할 때 ‘지정내용’ 그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은 단순히 변경의 요청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후속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9) 「항만법」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존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 및 공모 제도(제47조)를 폐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부가 수립한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법 제47조 삭제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삭 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

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거나 제2항에 따라 공모로 제출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모한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 또는 공모자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 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검토·평
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통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예정자
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한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승인 신청을 받은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예정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2.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3.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4.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적정성
 5.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등의 적정성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와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계획의 적정성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51조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

	<u>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¹⁰⁾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¹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¹²⁾를 차용하는 것이며 비관리청항만개발사

10)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항만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⑫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업과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정부와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5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요구하는 ‘적정성’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제4호의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시행령 제24조제1항13)에 의해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항 제5호의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는 사업 시행 과정에

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서 확정되는 사후적 요소이므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를 요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의 대상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에 포함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6항의 준용 등 행정 절차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자구 수정사항으로, 안 제50조제1항의 약칭 규정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앞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안 제50조의2제7항의 승인이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임을 명시하여 공고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이 공공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개발 절차를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 도입 등 합리적인 절차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실시계획 포함 사항 및 승인 후 착수 조건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의 처분계획서를 추가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조성토지</u> 의 처분계획서	7. <u>조성토지</u>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로 보임.

-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50조의2에서 사업계획 승인 시 20일의 처리 기간을 두고 기한 내 미처리 시 승인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한 것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서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기간 및 승인 간주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51조제7항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83조제1항제4호¹⁴⁾를 참고하여 유사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해양수산부는 개정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4)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u>준용한다</u>.	<u>는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입주기업체 또는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임대 또는 양도</u> 2. <u>제66조에 따라 지정된 1종 한만배후단지관리기관에 대한 양도</u> ③ ----- ----- -----<u>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가격 산정은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규정¹⁵⁾하고 있을 뿐, 취득 이후의 토지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나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매도청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 또는 임대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3항¹⁶⁾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 제74조제3항을 준용하려는 것은 유사 절차에서의 가격 산정 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이해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15) 「항만법」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16) 「항만법」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61조제2항에서 조치 명령의 기준으로 제시한 ‘취득 목적’은 의미가 불분명함.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할 뿐 별도의 구체적인 취득 목적이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취득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취득목적’ 대신 다른 판단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61조제1항이 매도청구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토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의 일부를 매도 청구로 취득한 뒤 목적과 달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토지의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토지 범위 및 토지 분양가의 상한금액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사용분 외 나머지 토지를 분양할 경우 그 가격을 총사업비의 115%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 -----토지(제61조제1항에 따라 매도를 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토지 중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u>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으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어 취득한 토지 전량을 제3자에게 분양하여 막대한 분양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개정안은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사용 토지의 비율과 분양가 상한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분양가 상한액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⁷⁾도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고시 및 조례로 정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분양가 상한액 수준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62조제3항은 토지의 처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미 같은 조 제1항에서 토지의 처분방법을 직접 사용·분양·임대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외에 다른 처분 방법이 존재하기 어려
운바, 처분방법에 대해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실익이 낮으므
로 해당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명시한 토지의 직접 사용은 실수
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주체에서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62조
제1항 후단의 ‘사업시행자’를 ‘제5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
른 사업시행자¹⁸⁾’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62조제1항에 명시된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도를 청
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문구를 추가하여 해당 괄호 안의 내용이 제2항의 분양가격
제한 대상 토지 규정 등 같은 조의 다른 항에서도 일관되게 적
용되도록 조문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종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후 직접 사용하지 않
고 토지 전체를 분양하여 수익만 누릴 수 있었던 제도적 문제점

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7486호)」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위해 토지의 직접 사용 범위를 정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로 취득한 토지분양 시 분양가의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적정수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8.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3조를 삭제하려는 것임(법 제63조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 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¹⁹⁾).

현행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준공 시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만큼 부지를 취득하므로 토지가액이 상승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가 줄어들어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text{취득 면적(m}^2\text{)} = \text{총사업비(원)} \div \text{감정평가 토지가액(원/m}^2\text{)}$$

- 개정안은 위와 같이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서는 다른 개발사업²⁰⁾과 달리 토지가액이 상승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가 줄어드는 구조로 초과 이익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을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 다른 개발사업은 토지를 선 취득 후 개발하는 형태이므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달리 개발 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 다. (생략)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 바. (생략)

2.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신설>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로 한정한다)

5.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내용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위반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9.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

②·③ (생략)	<u>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명령으로 한정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²¹⁾은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조치 명령 없이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형벌 합리화를 위해 준공 전 사용신고 미이행 시 먼저 조치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²²⁾을 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계획 승인 제도 등 개

21) 「항만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준공확인)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항만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편된 사업 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에서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명령을 우선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미신고
시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법 제110조제1호²³⁾를 삭제하여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8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은 ‘승인내용’ 위반을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0조의2제2항 등에서 요건
충족 시 지속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구체적인 ‘승
인내용’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위반 대상을 ‘승인받은 사항’ 등
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준공 전 사용신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
으로 항만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민생경제 부
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선 조치 명령 후 형벌 부과 개정안
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항만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
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10. 공익을 위한 처분에 항만배후단지개발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 ----- ----- ----- ----- -----승인,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4조²⁴⁾는 공익을 위한 처분 대상으로 일반 항만개발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시설 사용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어, 항만배후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국가 경제와 항만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나 비상시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항만 관리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는 전시·사변 등 공익을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4) 「항만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 -----

가. ~ 라. (생략) <u><신설></u> 2.·3. (생략) ② ~ ④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 인의 내용</u>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5조²⁵⁾는 항만개발사업 등 다양한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 승인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5) 「항만법」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보고·검사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이 승인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문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85조제1항제1호마목은 ‘승인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의 내용’은 승인의 구체적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승인받은 사항’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청문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청문)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4. ----- ----- -----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나. 검토의견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26)),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²⁷⁾하고 있음.

현행 「항만법」 제100조²⁸⁾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을 규정

26)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7)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8) 「항만법」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법 제50조 및 제83조를 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청문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50조 및 제83조의 개정에 맞추어 청문의 대상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8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취소의 대상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이므로, 안 제100조제4호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13. 벌칙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의 지정을 받은 자와 제50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 -----제50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공모 및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자와 달리 아직 구체적인 사업권이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적 지위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방식을 사업계획 제안 및 공모를 통한 시행예정자 지정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전환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인지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은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되는 단

계 이전의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는 점, 유사 입법례²⁹⁾에서도 허가·인가 또는 승인과 같이 법적 권리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단계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도시개발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4.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설되는 제41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담고 있음.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기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역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로 지정된 자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안 부칙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³⁰⁾

문 의 처
02)6788-5427

30)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